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구역장, 반장 모임	4월 8일(수) 20:00	식당
자녀를 위한 기도	4월 10일(금) 19:40	1교실
위령봉사회	4월 12일(일) 11:40	보스코홀
M.E.	4월 12일(일) 11:50	6교실
우리어머니 Cu.	4월 12일(일) 12:30	강당
사도들의 모후 Cu.	4월 12일(일) 11:40	식당
사목회의	4월 16일(목) 19:40	강당

알림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 4월 6일(월) 10:30
- 4월 10일(금)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
- 4월 15일(수) 11시 강당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4/12) 청소 담당 : 5구역

영명축일 축하미사

- 일시 : 4월 9일(목)
- 축일이 4월이신 신자분들 대상으로 미사 때 안수 및 작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부활 특강 안내

일시	제목	강사
4월 7일(화) 19:40	부활을 만나리라	박해승 신부님
4월 11일(토) 20:00	여한없는 삶	이춘섭 신부님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4/4	김민준	알폰소	군중교구
10/7	박상희	바오로	구로2동
14/2	박영순	소피아	부산/명지 파티마 성모
15/1	소순승	안드레아	길음동
15/3	권준현	안드레아	흑석동
18/1	이종성	미카엘	수원/철산
22/3	박혜지	니콜	의정부/후곡

주 세례식

-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명	세례명	성명	세례명
김경미	레지나	이재현	예로니모
김수연	가브리엘라	조윤희	헬레나
김진성	제피리노	천페페	미카엘라
백승원	미카엘	최은경	로사
우성현	바오로	홍현자	라파엘라
양회순	마리아		

성모성심회 성지순례

- 일시 : 4월 18일(토) 8시 30분
- 장소 : 단내 성가정 성지(경기도 이천)

우리들의 정성(3월 25일 ~ 3월 31일)

교무금	10,319,000원
주일헌금	현금 5,261,000원 신자앱 26,000원
2차헌금	2,247,100원

- 감사헌금 정영자 1만원 익명 100만원 익명 50만원
황정후 5만원 이길자10만원 오명석 5만원
나경민20만원 임우빈 5만원 이순영 5만원
연순례30만원 김창현10만원 강나현1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5	황원선	김영균	오성환	김덕영	손정주
4/12	권태희	김영균	소영현	임종윤	김성해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4/5	김용진	최웅조	박용환	김영균
4/12	도현만	하재민	옥윤필	김용진

성가번호 ♪ 입당 : 130 ♪ 예물준비 : 134, 136 ♪ 영성체 : 129, 135 ♪ 파견 : 128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3 편 사 목

제 1 장 교 구

제 1 절 행정부

제 1 관 교구청

제 139 조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1항 총대리는 교구 전체의 통치에 관하여 교구장을 보필하는 교구 직권자로서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집행권을 갖는다(교회법 제475조 1항.제479조 1항 참조).

2항 총대리에게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479조 1항 참조).

1. 교회 직무의 서임(교회법 제157조 참조).
2. 성직자의 입적과 제적(교회법 제241.267.1015조 참조).
3. 사제의 인사(교회법 제497.502.524.547.552.557조 참조).
4. 사목구의 설정, 폐지 및 변경(교회법 제515조 참조).
5. 수도원의 설립(교회법 제609조 참조).
6. 성직 자치단의 교구활동에 대한 동의(교회법 제297조 참조).
7. 교구 설립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자의 퇴회(교회법 제691조 참조).
8. 신자들의 공립단체 설립과 사립단체 승인(교회법 제312. 322조 참조).
9. 교구 대의원회의 소집(교회법 제461조 참조).

3항 교구장 대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나, 특정인들에 대하여 총대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교회법 제476.479조 참조).

제 140 조 (이중 청원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소속 직권자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교회법 제65조 1항 참조).

2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같은 교구의 다른 대리가 유효하게 허락할 수 없다(교회법 제65조 2항 참조).

3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후에 이 거절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교구장에게서 허락받으면 무효이다(교회법 제65조 3항 참조).

제 141 조 (교구청 회의)

총대리는 교구 전반의 안건에 관하여 교구장 대리, 사무처장, 사목국장, 관리국장, 교육국장, 성소국장, 홍보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구 행정 실무자 회의를 규정에 의해 소집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교구장에게 보고한다(교회법 제473조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